

第 14 回 臨時會

2005. 3. 22(火)

— 계룡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—

檢 討 報 告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申 東 熙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” 이 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” 로 개정 되면서,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·시행됨에 따라
-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,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지평가 위원회가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조례 명칭을 “토지평가위원회 조례” 에서 “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” 로 변경 함
- 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” 이 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” 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 함(안 제1조)
- “토지평가 위원회” 를 “부동산 평가위원회” 로 변경함(안 제1조)
-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등으로 확대함(안 제2조)
-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(안 제3조)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업무분야별 담당 및 담당자로 둠(안 제9조)

— 개별공시지가(토지관리 업무담당), 개별주택가격공시(과표업무 담당)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달라진 상위법규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
- 다만,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,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 됨